

예산총칙

2016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33,146,763	3,994,403
일반회계	115,868,652	3,476,060
특별회계	17,278,111	518,343
기타특별회계	17,278,111	518,343
의료급여기금	227,519	6,826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47,500	1,425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	1,172,087	35,163
주거환경개선사업	501,173	15,035
주차장	15,103,978	453,119
지하수관리	225,854	6,776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안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086,381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